

벽파항 무단 점용·적치물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

「어촌·어항법」 제45조(금지행위)에 따라 벽파항 무단 점용·적치물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및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가 불분명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4일

진도군수



1. 공 고 명 : 벽파항 무단 점용·적치물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령 : 「어촌어항법」 제45~46조,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3. 공고기간 : 23. 12. 14. ~ 23. 12. 28.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읍·면 게시판 등 게시
5. 공고대상 : 벽파항 어항시설(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740-5) 내 적치물



위 치(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740-5(벽파항))



적치물(철근)

6. 공고내용

- 공고대상 시설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문의 사항이 있을 시,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진도군 해양항만과(담당자 황지수, ☎061-540-646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 공고 기간 내에 벽과항 내 불법적치물을 자진 정비(철거)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(대집행과 비용징수) 및 제3조(대집행의 절차)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.
-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「국세징수법」의 예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라 공매(폐기) 처분할 수 있습니다.
- 공고기간 내 벽과항 내 불법적치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, 일시 제거 후 재설치할 시, 「어촌·어항법」 제46조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4조에 따라 불법적치물을 직권으로 대집행(제거)하며, 이로 인한 재산상 손실 발생에 대해 관리청은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해양항만과(담당자 황지수, ☎061-540-646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진도군수

귀하

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